

무배당

이조은 치아보험 [21.04]



약관 이용 Guide Book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약관 이용
가이드 북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지침서**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약관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의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약관**



보험약관
(주계약&특약)

- **주계약(보통약관)**: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 **특약(특별약관)**: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 선택 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용어해설 및
색인 등

약관 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법률·보험용어의 해설**, 가나다 順 **특약 색인**, 관련 **법규**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QR (Quick Response) 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 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 [보통약관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영상자료 등을 안내해 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2 청약 철회

제22조(청약의 철회)



3 계약 취소

제2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4 계약 무효

제24조(계약의 무효)



5 계약 前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6 계약 後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7 보험료 연체 및 해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8 부활(효력회복)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9 해지환급금

제41조(해지환급금)



10 보험계약대출

제42조(보험계약대출)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아래 **7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각화된 '**약관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 요약서**

2

'**약관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체크항목**

3

'**가나다順 특약 색인(索引)**'을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주 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 가입(의무특약 제외) 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음

➔ **특약 색인**

4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해설**, **약관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용어 해설**

5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QR코드**

6

'**관련법규**'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기타관계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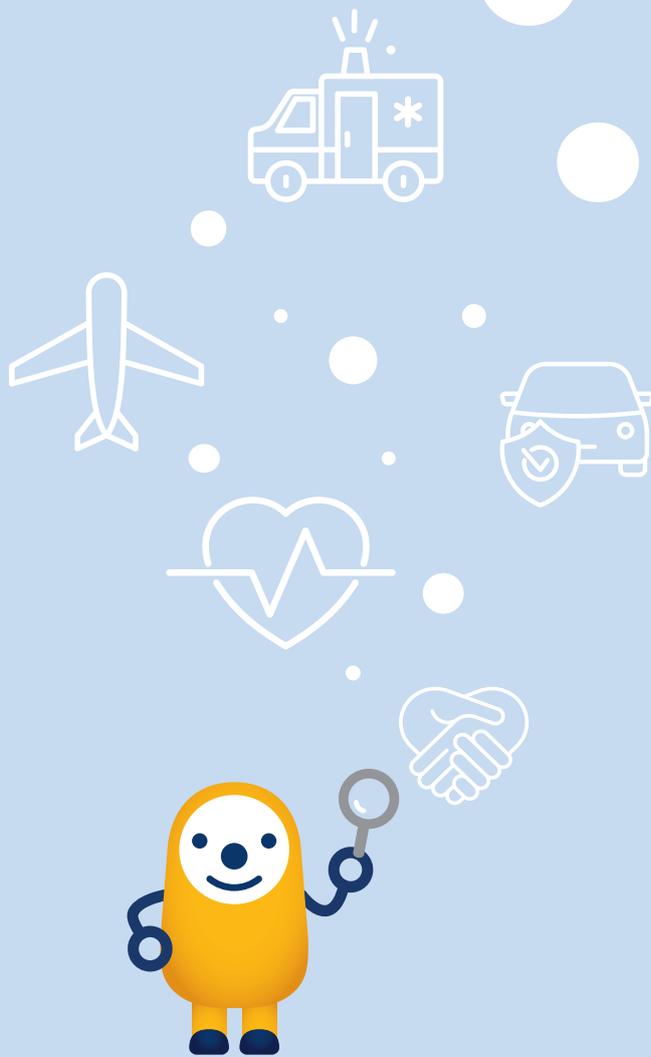
7

약관조항 등이 **음영·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mggeneralins.com), 고객 콜센터(1588-5959)로 문의 가능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FINE, fine.fss.or.kr](http://FINE.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약관 요약서

- I. 보험계약의 개요
- II.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 III.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요약서
- IV. 보험금 청구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 V.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I. 보험계약의 개요



01. '(무)이조은 치아보험' 주요특징



치아보존치료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등

치과 관련 치료

발치, 스케일링, 잇몸질환 등



무배당

이조은 치아보험



치아보철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

치아 외 보장

의료사고법률비용,
일반상해수술, 질병사망 등



1 다양한 치아 관련 질환을 골고루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 스케일링부터 보존치료, 보철치료, 영구치 상실위로금까지 보장
- ▶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크라운치료비 보장

2 고비용 임플란트는 물론, 재식립 치료비까지 든든하게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 임플란트 고정체 및 보철물 탈락으로 인한 재식립 치료비 보장

3 다양한 보험기간 운영으로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 가입 (연만기 자동갱신형)

- ▶ 가입연령 : 2세 ~ 70세 ※ 최대 80세까지 갱신

5년

10년

15년

20년

4 치아보험 가입으로 치아 외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 일반상해수술, 의료사고법률비용 보장
- ▶ 상해사망 / 질병사망 보장

I. 보험계약의 개요

02. '(무)이조은 치아보험' 상품 이해하기

무배당 이조은 치아보험



①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② 치아보험

치아보철, 보존치료와 같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치과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③ 갱신형

보험계약 갱신 시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II.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1.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및 보장한도** 등 **보험금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주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기간

면책기간

보험금
미지급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보통약관

담보명	면책기간
치수치료비(갱신형)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치아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면책기간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연간1회한,급여)(갱신형)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비(급여)(갱신형)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치료비(급여)(갱신형)		
치아보존치료비(크라운연간3개한)(갱신형)		
치아보존치료비(크라운무제한)(갱신형)		
치아영상(X-ray및파노라마촬영)진단비(급여)(갱신형)		
치아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료비(급여)(갱신형)		
영구치보철치료비(연간3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영구치보철치료비(무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영구치상실위로금(갱신형)		
신영구치보철치료비(연간3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신영구치보철치료비(무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영구치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연간3개한)(갱신형)		
영구치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무제한)(갱신형)		
어린이치아치료보장비 (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갱신형)		발치 영구치상실 보철 치조골이식

!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한해 면책기간 반영
주의

II.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 감액지급

감액지급
50%
[1년 이내]

이 보험에는 **일정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 보통약관

담보명	감액기간 및 비율
치수치료비(갱신형)	가입 후 1년간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치아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감액기간 및 비율	
치아보존치료비(크라운연간3개한)(갱신형)	가입 후 1년간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치아보존치료비(크라운무제한)(갱신형)		
영구치보철치료비(연간3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가입 후 2년간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영구치보철치료비(무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신영구치보철치료비(연간3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신영구치보철치료비(무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영구치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연간3개한)(갱신형)		
영구치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무제한)(갱신형)		
어린이치아치료보장비 (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갱신형)	발치	-
	영구치상실	
	보철	가입 후 2년간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치조골이식	

!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한해 감액기간 반영
주의



☑️ 보장한도

보장한도
연간
횟수 제한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치아관련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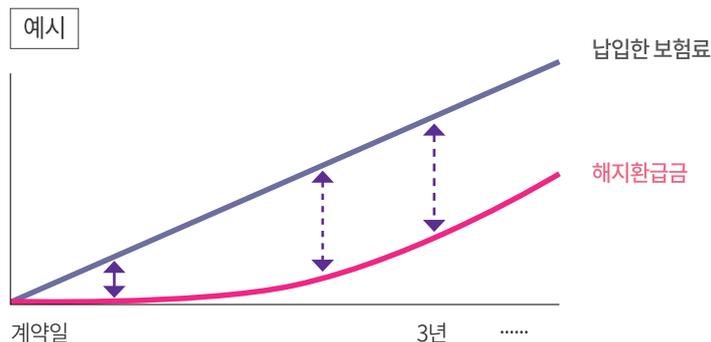
담보명	한도내용
치아보존치료비(크라운연간3개한)(갱신형)	크라운의 경우 연간3개한 에 한해 보장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연간1회한,급여)(갱신형)	각 연간1회한 에 한해 보장
영구치보철치료비(연간3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브릿지, 임플란트의 경우 연간 3회한 에 한해 보장, 틀니의 경우 연간 1회한 에 한해 보장
신영구치보철치료비(연간3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영구치보철치료비(무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틀니의 경우 연간 1회한 에 한해 보장
신영구치보철치료비(무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영구치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 (연간3개한)(갱신형)	연간 3개한 에 한해 보장

0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적음
[납입기간중해지시]

!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해지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II.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3.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 이 보험에는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갱신형 계약은 **갱신할 때마다** 연령의 증가, 위험률의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특약

이 상품은 갱신형 계약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계약 1개, 치아관련 특별약관(갱신형) 15개, 상해관련 특별약관(갱신형) 4개, 질병관련 특별약관(갱신형) 1개,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갱신형) 1개)

04.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① 보장성보험



- !** **주의**
- ① 이 보험은 상해 및 질병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②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 ③ 가입한 특약의 경우 기본계약과 보험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약별 보험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금리연동형보험



- !** **주의**
- ① 이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료 적립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변동**됩니다.
 - ② 동 이율은 납입한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위험 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③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입니다.

* 운용자산이익률,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회사가 보증하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

③ 예금자보호



- !** **주의**
- ①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② 예금자보호 한도는 MG손해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III.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요약서



0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의
- ① **청약일**부터 **30일**(만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 ②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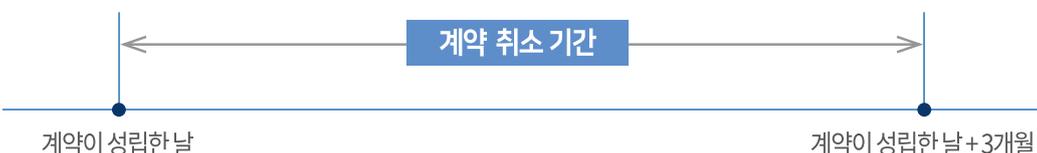
0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납입한 보험료 + 이자



III.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요약서

03. 보험계약의 무효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지정)로 한 경우
-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04. 보험계약前 알릴 의무 및 위반시 효과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 해지 가능
(회사)

보장 제한 가능
(회사)

- ! 주의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前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법률 지식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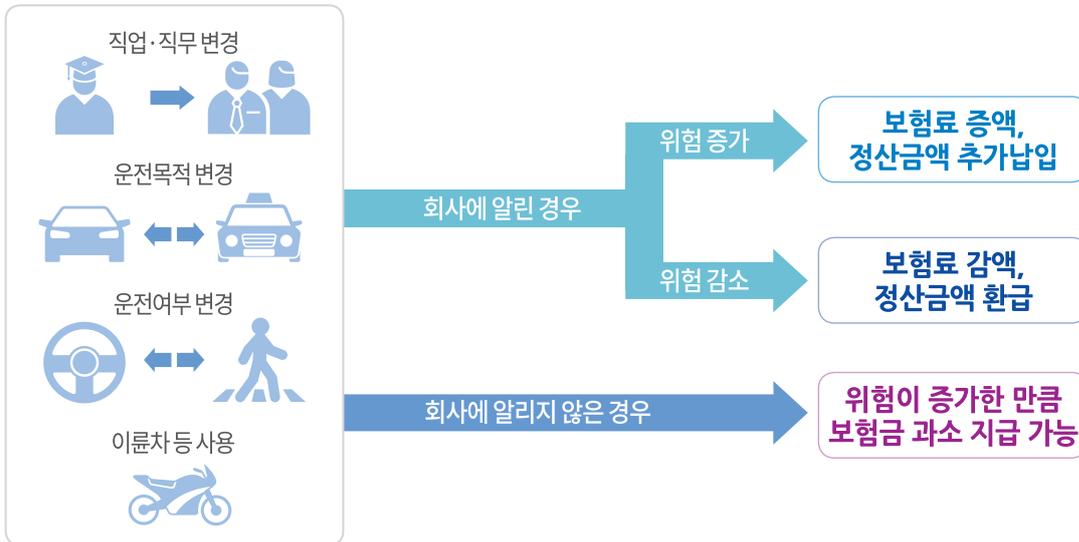
05. 보험계약後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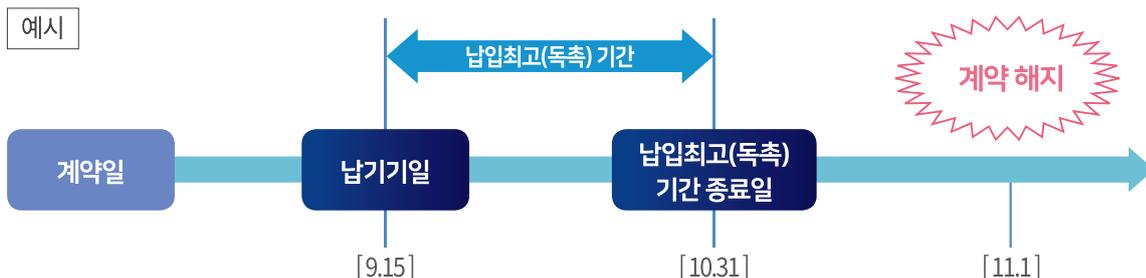
- 주의** ①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②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6.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 기간: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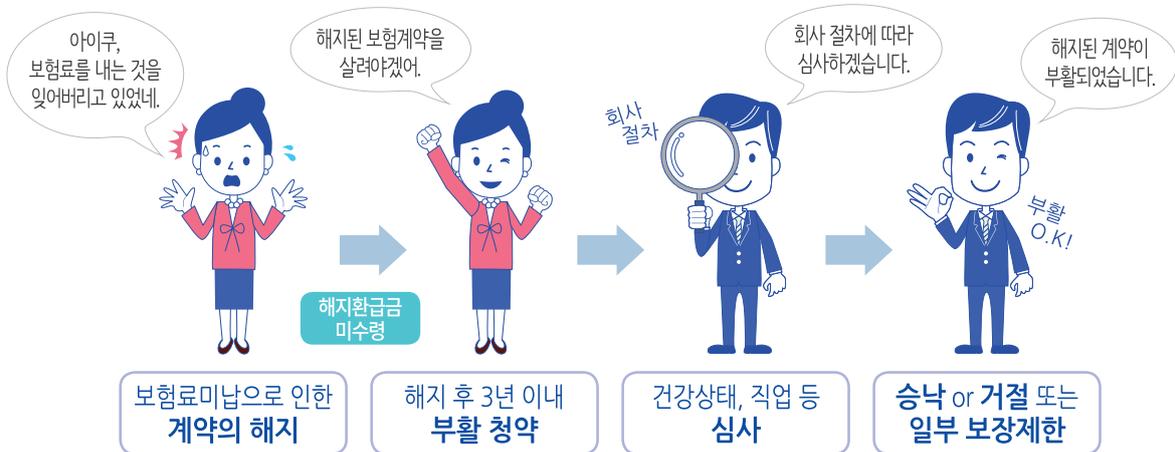


III.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요약서

07.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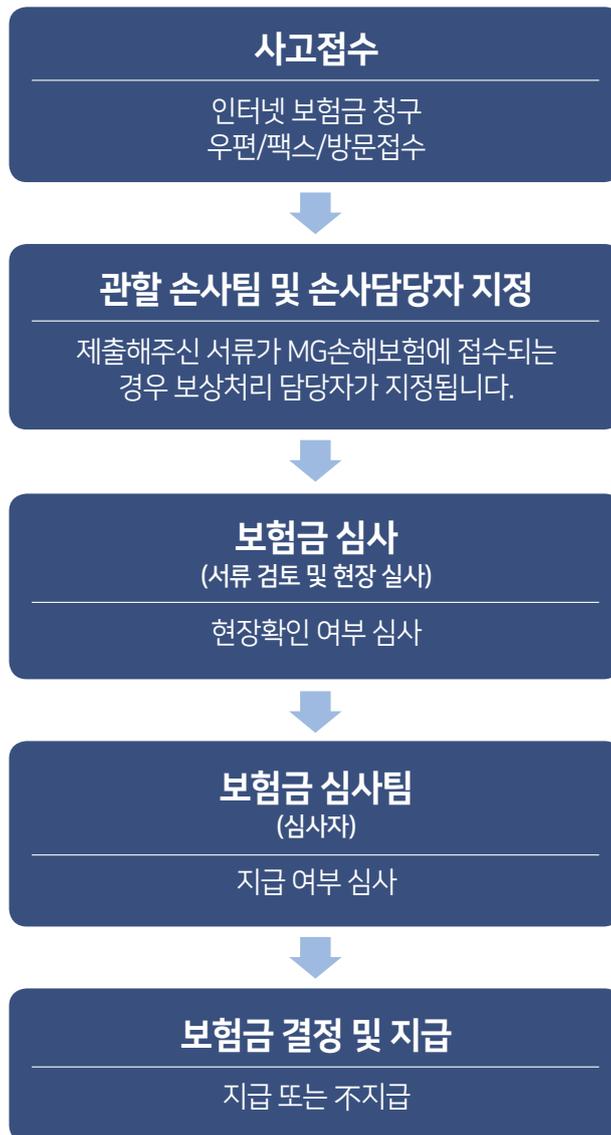
IV. 보험금 청구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01. 보험금 청구 절차

-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MG손해보험 홈페이지**(www.mgeneralins.com)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산정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콜센터** (Tel. 1588-5959)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립니다.



IV. 보험금 청구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02. 필요서류 안내



주의

- ① 소액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금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진단서	진단사실확인서류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공통
사망	● (사망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입원	●			●	
통원	△	△			
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진단	●	●			
골절	●	△			
수술	●		●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V.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



민원 사례 1

보험계약 前 알릴의무

A씨는 계약 체결 시 과거 치료이력이 별 것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약서의 질문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함. 이후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장을 일부 제한



보험회사는 가입시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안내

중요한 사항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보험계약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제한하는 등 계약인수여부 또는 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또한 청약서 상의 질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민원 사례 2

보험계약 後 알릴의무



B씨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변경된 후,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쳤는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어 민원을 제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함을 안내

민원 사례 3

갱신형



C씨는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갱신 시점에서 자동갱신 안내 문에 기재된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

V.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

민원 사례 4

해지환급금



D씨는 계약 체결 6개월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어 민원을 제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서 은행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 있음을 안내

무배당

이조은 치아보험

[21.0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되며, 고객이 영업장,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공사실 통보 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공·이용 동의철회 요구권 및 연락중지 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 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한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의 권리행사(동 법률 제35조~38조)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 화 : 1588-5959
- ▶ 인터넷 : <http://www.mgeneralins.com>
- ▶ 서 면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5 MG손해보험빌딩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당사 개인정보 보호실무책임자 :

- ▶ (02)3788-2856/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5

나. 손해보험협회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 ▶ (02)3702-8500/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 ▶ 국번없이 133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용어해설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적립부분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지환급금	· 계약의 효력 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목 차

◇ 무배당 이조은 치아보험(21.04)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 제8조(보험금의 청구)
-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제10조(「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의 적용 및 공시)
-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 제1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제14조(주소변경통지)
- 제1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제16조(대표자의 지정)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1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 제22조(청약의 철회)
- 제23조(약관교부 및 설명 의무 등)
- 제24조(계약의 무효)
-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 제26조(자동갱신의 적용)
-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28조(보험나이 등)
- 제29조(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제3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제3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제33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36조(강제집행 등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3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제3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제3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제40조(위법계약의 해지)
- 제41조(해지환급금)
- 제42조(보험계약대출)
- 제43조(배당금의 지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 제44조(분쟁의 조정)
- 제45조(관할법원)
- 제46조(소멸시효)
- 제47조(약관의 해석)
- 제4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제4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제50조(개인정보보호)
- 제51조(준거법)
- 제5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무배당 이조은 치아보험(21.04) 특별약관

【 치아관련 특별약관 】

1. 치아보존치료비(크라운연간3개한)(갱신형) 특별약관
2. 치아보존치료비(크라운무제한)(갱신형) 특별약관
3.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연간1회한,급여)(갱신형) 특별약관
4. 치아영상(X-ray및파노라마촬영)진단비(급여)(갱신형) 특별약관
5. 치아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료비(급여)(갱신형) 특별약관
6.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비(급여)(갱신형) 특별약관
7.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치료비(급여)(갱신형) 특별약관
8. 영구치보철치료비(연간3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9. 영구치보철치료비(무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10. 영구치상실위로금(갱신형) 특별약관
11. 신영구치보철치료비(연간3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12. 신영구치보철치료비(무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13. 영구치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연간3개한)(갱신형) 특별약관
14. 영구치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무제한)(갱신형) 특별약관
15. 어린이치아치료보장비(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갱신형) 특별약관

【 상해관련 특별약관 】

1. 일반상해수술비(갱신형) 특별약관
2.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갱신형) 특별약관
3. 골절수술비(갱신형) 특별약관
4. 일반상해사망보험금(갱신형) 특별약관

【 질병관련 특별약관 】

1. 질병사망보험금(갱신형) 특별약관

【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

1.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형) 특별약관

【 제도성 특별약관 】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2.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미보장 특별약관
3.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별표

【별표1】 장애 분류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별표3】 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 【별표4】 골절분류표
- 【별표5】 특정부위 분류표
- 【별표6】 특정질병 분류표
- 【별표7】 기타관계법규

무배당
이조은 치아보험(21.04)
보통약관

무배당 이조은 치아보험(21.04)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상해, 질병, 비용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1) 상해 및 질병보장: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비용손해보장: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최초계약 :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에 의하여 최초로 성립된 계약을 "최초계약"이라 합니다.

사. 갱신계약 :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 후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애 : 【별표1】(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애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X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X 10%) = 121원

【단리와 복리】

이자 계산에서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자율과 기간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쳐 그 합계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시말해 단리계산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고 복리계산은 (원금+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단리와 복리 계산을 일반화된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리 : $S = A(1+r \times n)$

▷ 복리 : $S = A(1+r)^n$

(S : 원금과 이자의 합계 / A : 원금 / r : 이자율 / n : 기간)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 가. 보험료 :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나. 보장보험료 :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다.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라.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마. 부가보험료 : 회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로 구분됩니다. 계약관리비용은 다시 유지관련비용과 기타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젓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젓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 ④ 이 계약에 있어서 “치수치료”라 함은 치아내부에 있는 치수(혈관이 밀집한 연조직)를 제거하여 통증이나 기타증상을 없애고 치아가 제자리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유치 및 영구치에 대한 치수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에 아래의 치수치료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치수치료비	보험가입금액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1년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치수치료비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의 “치수치료”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참조)에서 규정한 치과병원·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치아에 대한 치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우식	K02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	K04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5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이상의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치아당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수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봅니다.
- ⑤ 이미 치수치료를 받은 유치 및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치수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의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이 보장의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 보장의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수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7. 치수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개시한 경우
 8.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2. 매몰치 및 매복치	K01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4. 잇몸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장애	K06
5.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9. 이미 치수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상해 및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은 경우
10.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1.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치료확인서(당사양식)
 - 가. 진료된 치아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 나.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또는 발거원인)
 - 다. 진료내용
 - 라. 진단확정일, 진료일수,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발거일(치아발거시)
 3. 치료 전후 해당 치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필요에 따라 파노라마사진)
 4. 진료비계산서
 5.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및 확인에 대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제10조(「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로 하며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계산)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를 적용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0.2%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0.3%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2%)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3%)로 부리됩니다.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써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범위 내에서 횡수에 제한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4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해지환급금은 제42조(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중도인출시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예시】

중도인출을 요청하는 시점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한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30만원인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잔여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 - 30만원 = 50만원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제1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4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16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지는 것과는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례】
 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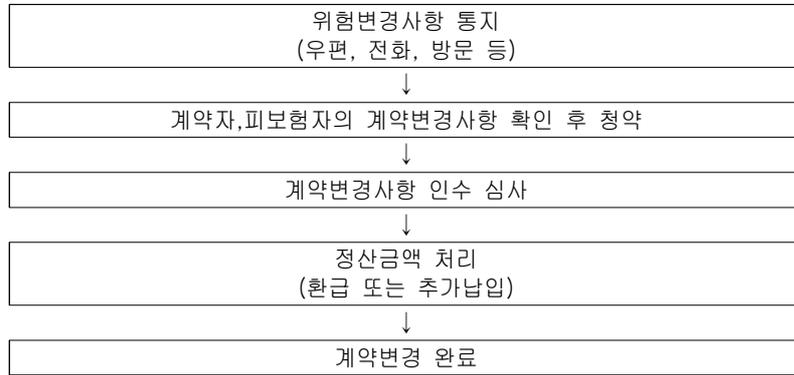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대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대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⑧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특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⑦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22조(청약의 철회)

- ①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청약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 제9조(보험금의 지급 절차)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 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23조(약관교부 및 설명 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집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드립니다.
-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합니다)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 의무의 중요사항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24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합니다. 단,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 ①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신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전 계약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1. 갱신된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내일 것
 -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나이의 범위내일 것
 - 3.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② 이 계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만기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80세 계약해당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③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최초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고 납입기간은 전기납으로 합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갱신전 계약이 갱신계약으로 자동갱신 되는 경우,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증권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6조(자동갱신의 적용)

- ① 회사는 갱신후 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며(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 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갱신제한 사유 및 제1항의 갱신후 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종목
 - 2. 보험기간
 -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피보험자
 -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을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28조(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청약서류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생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95년 6월 2일, 현재(계약일) : 2021년 1월 10일
 → 2021년 1월 10일 - 1995년 6월 2일 = 25년 7월 8일 = 26세

【계약해당일 예시】
 보험계약일이 해당년도에 없는 경우에는 계약발생월의 말일을 해당년도의 계약일로 합니다.
 → 보험계약일이 2016년 2월 29일인 경우 2017년 2월 28일을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9조(계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제42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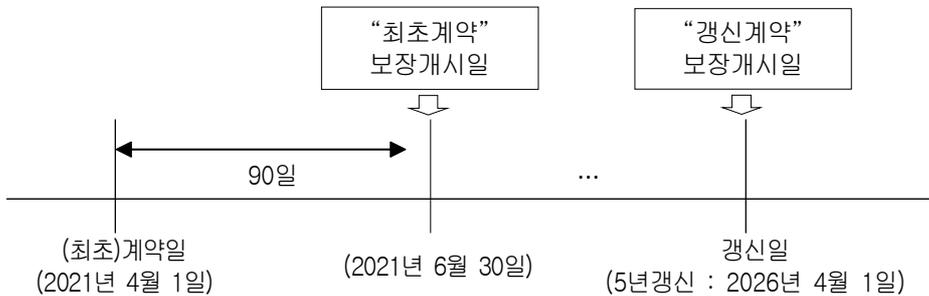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보장개시일” 예시】 (단, 질병에 대한 보장인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⑤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3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3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2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4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3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후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계약은 해제됩니다.
- ②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의 합계액)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부활(효력회복)시 보장개시일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의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⑤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질병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상해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

제36조(강제집행 등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함)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⑥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질병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상해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24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애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4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0조(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1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2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3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소멸시효)

- ①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됩니다.
-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0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3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7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에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에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4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50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5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배당
이조은 치아보험(21.04)
특별약관

무배당 이조은 치아보험(21.04) 특별약관

【 치아관련 특별약관 】

1. 치아보존치료비(크라운연간3개한)(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젓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젓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체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 ⑦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치아보존치료”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치아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형태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치료항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치료항목	정의
충전 치료	아말감	치아를 충전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리, 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산부식처리가 필요없는 화학접착으로 수복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레진필링	치아 충전 또는 수복 재료 중 치과용 레진을 치아에 직접 수복하는 충전치료(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형태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말하며, 이하 “충전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심미성이 요구되고 교합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치아 또는 손상부위가 작은 치아를 충전할 경우에 씁니다.
	인레이·온레이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구강 외에서 본을 떠 금이나 도재 등의 재료로 구조물을 제작하고 시멘트를 사용하여 합착하는 간접적으로 충전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크라운 치료	크라운	임상적 치관(머리부분)의 모든 면을 금이나 세라믹 등의 충전물로 덮어 치아의 형태와 기능을 재생시켜 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유치 및 영구치에 대한 치아보존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치아보존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아말감·글래스 아이노머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무제한)
아말감·글래스 아이노머 이외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등)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무제한)
크라운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연간3개한)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 기준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1년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무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무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무제한)
아말감·글래스 아이노머 이외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등)	치아당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무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무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무제한)
크라운	치아당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연간3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3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3개한)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우식	K02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K04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5

③ 제1항의 “연간”이란 이 특약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복합 형태의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치아당 1회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보존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봅니다.

⑥ 이미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유치 및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치아보존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아보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아보존치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치아보존치료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7.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8.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개시하는 경우
 9.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2. 매몰치 및 매복치	K01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4. 잇몸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장애	K06
5.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10.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1.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치아보존치료비(크라운무제한)(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齧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체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 ⑦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치아보존치료”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치아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형태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치료항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치료항목	정의
충전 치료	아말감	치아를 충전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리, 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산부식처리가 필요없는 화학적착으로 수복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레진필링	치아 충전 또는 수복 재료 중 치과용 레진을 치아에 직접 수복하는 충전치료(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형태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말하며, 이하 “충전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심미성이 요구되고 교합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치아 또는 손상부위가 작은 치아를 충전할 경우에 씁니다.
	인레이·온레이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구강 외에서 본을 떠 금이나 도재 등의 재료로 구조물을 제작하고 시멘트를 사용하여 합착하는 간접적으로 충전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크라운 치료	크라운	임상적 치관(머리부분)의 모든 면을 금이나 세라믹 등의 충전물로 덮어 치아의 형태와 기능을 재생시켜 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유치 및 영구치에 대한 치아보존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치아보존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아말감·글래스 아이노머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무제한)
아말감·글래스 아이노머 이외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등)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무제한)
크라운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무제한)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 기준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1년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무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무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무제한)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이외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등)	치아당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무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무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무제한)
크라운	치아당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무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무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무제한)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우식	K02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K04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5

- ③ 제1항의 “연간”이란 이 특약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복합 형태의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치아당 1회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보존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봅니다.
- ⑥ 이미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유치 및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치아보존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아보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아보존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7.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8.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 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개시하는 경우
9.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2. 매몰치 및 매복치	K01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4. 잇몸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장애	K06
5. 치아열골이상(부정교합포함)	K07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10.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1.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연간1회한, 급여)(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젓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젓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 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라 함은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이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코드 분류

구분	진료행위코드
1. 1/3악당 스케일링	U2232
2. 전악 스케일링	U2233

- ⑥ “치아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라 함은 치주질환(잇몸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요소 중 치면에 부착된 치석(치면부착 이물질 포함) 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써 핸드 스케일러 혹은 초음파 치석제거기를 사용하는 술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마제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치면의 표면을 마무리 하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정 등의 개정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 ⑧ 제5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5항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외에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에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 ② 제1항의 “연간”이란 이 특약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의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2회 이상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치료로 봅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7.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8.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 질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개시한 경우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치아영상(X-ray 및 파노라마촬영)진단비(급여)(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치아영상(X-ray 및 파노라마 촬영)진단”이라 함은 치과치료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의 치아영상진단(이하 “급여인정 치아영상진단”이라 합니다)으로 아래의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코드 분류

구분		진료행위코드
X-ray 촬영	치근단 촬영(Periapical View)	G9101 ~ G9105
	교익 촬영(Bitewing View)	G9501 ~ G9505
	교합 촬영(Occlusal View)	G9601
파노라마 촬영(Panoramic View)		G9701, G976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정 등의 개정으로 “급여인정 치아영상진단”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인정 치아영상진단”을 따릅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의 “치아영상(X-ray 및 파노라마 촬영)진단”외에 “급여인정 치아영상진단”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X-ray촬영, 파노라마 촬영】
치과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의 치열 상태, 상하악골, 상악동, 하치조신경 경로 등 치과검진을 하기 위한 촬영술 식입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에 정한 “치아영상(X-ray 및 파노라마 촬영)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촬영 1회당 아래의 치아영상(X-ray 및 파노라마 촬영)진단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치아영상(X-ray 및 파노라마 촬영)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치아영상(X-ray 및 파노라마 촬영)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의 X-ray 촬영 또는 2회 이상의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개 이상의 치아에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았을 때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7.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치아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료비(급여)(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 치료”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에서 발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이하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코드 분류

구분		진료행위코드
단순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유치(Deciduous Tooth)	U4411
	전치(Anterior Tooth)	U4412
	구치(Posterior Tooth)	U4413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난발치(Complicated Extraction)	U4414
	단순매복치(Simple)	U4415
	복잡매복치[치아분할술을 실시한 경우](Complex)	U4416
완전매복발치 (완전 매복된 치아)	완전매복치[치관이 2/3 이상 치조골 내에 매복된 치아의 골절제와 치아 분할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Complete)	U441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정 등의 개정으로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의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 치료”외에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발치(拔牙)】 치아를 제거하는 외과적 처치로서, 아래에서 정한 단순발치, 정교한 발치 및 완전매복 발치를 말합니다.	
단순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정상 맹출된 치아를 제거하는 치료술식으로 발치경자 등의 기구를 활용하지만 잇몸 절개, 치아분할 또는 골삭제 등을 하지 않고 정상 발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발치할 치아가 치조골에 부분적으로 매복되어 있는 경우 또는 파절된 치아를 제거하기 위한 시술이며 단순 발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완전매복 발치 (완전 매복된 치아)	치관의 2/3 이상이 치조골 또는 악골내에 매복된 경우이며 골삭제와 치아 분할술이 필요한 치료술식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에 정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발치치료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단순발치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5%(치아당)
정교한 발치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치아당)
완전매복 발치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치아당)

2.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단순발치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5%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5% (치아당)
정교한 발치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치아당)
완전매복 발치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치아당)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의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열교정, 양악수술 등 미용상의 치료. 단,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비(급여)(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이란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이하 “주요치주질환 급여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코드 분류

구분		진료행위코드
1/3약당지급	치주소파술	U1010
	치은신부착술	U1020
	치은성형술	U1030
	치은절제술	U1040
	치은박리소파술(간단)	U1051
	치은박리소파술(복잡)	U1052
	치근면처치술	U1060
치료1회당지급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식의 경우)	U1071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자가골이식의 경우(채취포함))	U1072
	조직유도재생술(골이식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U1081
	조직유도재생술(골이식을 동반한 경우,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의 경우)	U1082
	조직유도재생술(골이식을 동반한 경우, 자가골이식의 경우(채취포함))	U1083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U1090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U1100
	치은이식술	U1110
	치관분리술	UX102
치료치아1개당지급	치근절제술(선택적치근절제술)	U1131
	치근절제술(치아반측절제술)	U1132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	UY101
	치관확장술(근단변위판막술)	UY102
	치관확장술(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UY103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1/3약이란 치아전체(상악(윗니), 하악(아랫니))를 각 좌측구치부, 우측구치부, 전치부로 3구역으로 나눈 단위로써 1인당 6개의 1/3약을 가집니다. 전치부란 송곳니와 반대 송곳니부분에 해당하는 앞니(송곳니포함)에 해당하며, 구치부는 전치부 이외의 어금니 치아부분에 해당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정 등의 개정으로 “주요치주질환 급여인정 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 급여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외에 “주요치주질환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에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진료행위별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7.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치료비(급여)(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 치료”란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에서 좌·우측 상·하악 제1큰어금니 및 제2큰어금니(8개 치아)에 시행한 아래의 진료행위를 말하며, “치면열구전색술 급여인정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이하 “치면열구전색술 급여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코드 분류

구분	진료행위코드
치면열구전색술	U239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정 등의 개정으로 “치면열구전색술 급여인정 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치면열구전색술 급여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의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 치료”외에 “치면열구전색술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치료】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치아의 교합면에 존재하는 홈을 메우는 예방적 치과술식을 말합니다. 단,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인 제1큰어금니 및 제2큰어금니(좌·우측 상·하악 총 8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우식 발생 위험치아로 판정되어 특수예방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치아당 아래의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7.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8.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6조(계약의 자동갱신)

- ①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신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전 계약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1. 갱신된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내일 것
 -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나이의 범위내일 것
 - 3.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② 이 계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만기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18세 계약해당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③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최초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고 납입기간은 전기납으로 합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갱신전 계약이 갱신계약으로 자동갱신 되는 경우,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증권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영구치보철치료비(연간3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젓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젓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체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 ⑦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치아보철치료”란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영구치 발거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후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치료항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환자가 임의로 구강 내에서 빼고 갈 수 있는 인공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 크게 국소의치와 총의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완전히 치아에서 지지를 받거나, 잔존 치조제 조직과 치아 양쪽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상악이나 하악의 모든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을 대체하는 치과 보철물을 말하며, 전적으로 조직(점막, 결체 조직 및 하부골조직)에 의해 지지를 받습니다.
 - 2.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인공 보철물을 말합니다.
 - 3. 임플란트(Implant) :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매식물(Fixture)을 식립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영구치보철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임플란트 (Implant)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2년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보철물당, 연간1회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임플란트 (Implant)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우식	K02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K04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5

③ 제1항의 “연간”이란 이 특약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영구치 발거일)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복합 형태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를 발거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부위에 치아보철치료를 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아보철치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내에서 영구치보철치료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7.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8.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9.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영구치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2. 매몰치 및 매복치	K01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4. 잇몸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장애	K06
5.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10.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1.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9. 영구치보철치료비(무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젓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

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체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 ⑦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치아보철치료”란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영구치 발거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후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치료항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환자가 임의로 구강 내에서 빼고 낄 수 있는 인공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 크게 국소의치와 총의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완전히 치아에서 지지를 받거나, 잔존 치조제 조직과 치아 양쪽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상악이나 하악의 모든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을 대체하는 치과 보철물을 말하며, 전적으로 조직(점막, 결체 조직 및 하부골조직)에 의해 지지를 받습니다.
 - 2.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인공 보철물을 말합니다.
 - 3. 임플란트(Implant) :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매식물(Fixture)을 식립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영구치보철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임플란트 (Implant)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2년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보철물당, 연간1회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임플란트 (Implant)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우식	K02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K04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5

③ 제1항의 “연간”이란 이 특약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영구치 발거일)로 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복합 형태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를 발거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부위에 치아보철치료를 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아보철치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내에서 영구치보철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7.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8.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9.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영구치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2. 매몰치 및 매복치	K01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4. 잇몸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장애	K06
5.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10.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1.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영구치상실위로금(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젓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젓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구치를 상실했을 때에는 상실된 영구치 1개당 아래의 영구치상실위로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영구치상실위로금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 1개당)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영구치상실위로금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 1개당)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우식	K02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K04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5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영구치발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영구치 발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제3대구치(사랑니)를 발거하는 경우
 7.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8. 맹출장애 : 부분 매복되었거나, 완전 매복되어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9.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2. 매몰치 및 매복치	K01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4. 잇몸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장애	K06
5. 치아알골이상(부정교합포함)	K07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치료확인서(당사양식)
 - 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치과치료 진단서
 - 1) 진료된 치아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및 발거일자
 - 2)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3)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나. 치과진료기록 사본
 - 다. 회사는 상기 “가”, “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구치 발거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신영구치보철치료비(연간3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젓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젓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체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 ⑦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보철치료비) 제1항에서 “치아보철치료”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영구치 발거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후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치료항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환자가 임의로 구강 내에서 빼고 낄 수 있는 인공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 크게 국소의치와 총의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완전히 치아에서 지지를 받거나, 잔존 치조제 조직과 치아 양쪽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상악이나 하악의 모든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을 대체하는 치과 보철물을 말하며, 전적으로 조직(점막, 결체 조직 및 하부골조직)에 의해 지지를 받습니다.
 2.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인공 보철물을 말합니다.
 3. 임플란트(Implant) :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매식물(Fixture)을 식립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 ⑧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 제1항에서 “재식립임플란트치료”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임플란트의 본체인 매식물(Fixture)을 제거하고 동일 부위에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보철치료비)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영구치보철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임플란트 (Implant)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2년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보철물당, 연간1회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임플란트 (Implant)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연간3개한)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우식	K02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K04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5

③ 제1항의 “연간”이란 이 특약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영구치 발거일)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복합 형태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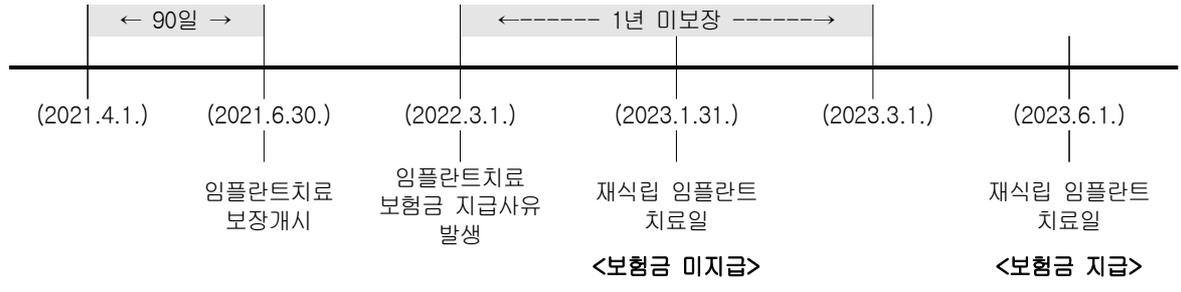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를 발거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부위에 치아보철치료를 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임플란트로 인하여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보철치료비) 제1항에서 정한 영구치보철치료비(이하 “임플란트치료 보험금”이라 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동일 부위에 “재식립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계약일 : 2021년 4월 1일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임플란트를 받는 경우]



※ 임플란트로 인한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동일 부위에 그 임플란트로 인한 임플란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하지 않음

- ② 제1항의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는 동일부위 당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이미 재식립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위에 다시 “재식립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및 “재식립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날은 매식물(Fixture)을 식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보철치료비)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아보철치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영구치보철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재식립 임플란트치료”에 한하여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 임플란트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아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영구치 발거를 진단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1.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아보철치료를 하고, 그 임플란트 치아보철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 2.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 이내에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아보철치료를 하고, 그 임플란트 치아보철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임플란트 치아보철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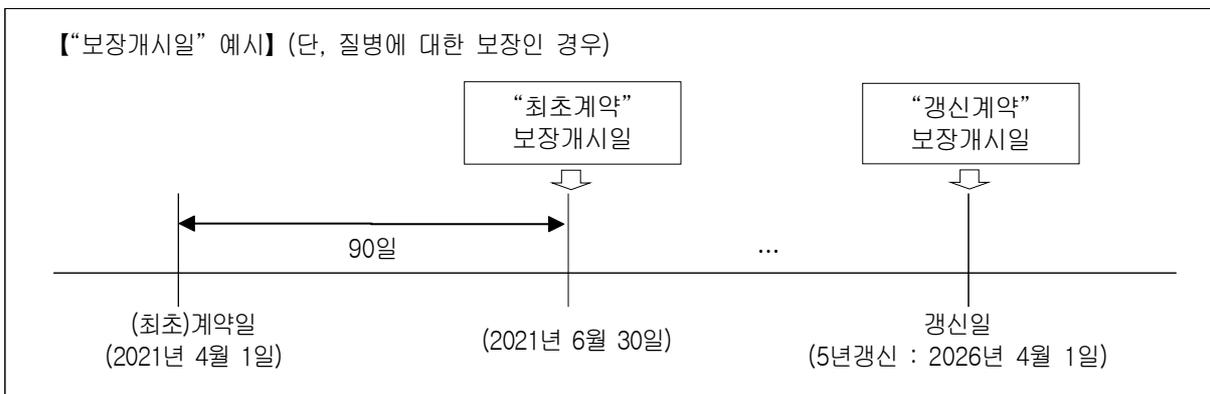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7.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8.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9.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영구치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2. 매몰치 및 매복치	K01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4. 잇몸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장애	K06
5.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10.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1.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보철치료비) 및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재식립임플란트 치료비)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보철치료비)의 제1항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보통약관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2.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비)의 제1항의 보장개시일은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신영구치보철치료비(무제한,틀니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젓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체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 ⑦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보철치료비) 제1항에서 “치아보철치료”란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영구치 발거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후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치료항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환자가 임의로 구강 내에서 빼고 갈 수 있는 인공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 크게 국소의치와 총의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완전히 치아에서 지지를 받거나, 잔존 치조제 조직과 치아 양쪽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상악이나 하악의 모든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을 대체하는 치과 보철물을 말하며, 전적으로 조직(점막, 결체 조직 및 하부골조직)에 의해 지지를 받습니다.
 2.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인공 보철물을 말합니다.
 3. 임플란트(Implant) :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매식물(Fixture)을 식립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 ⑧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 제1항에서 “재식립임플란트치료”란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임플란트의 본체인 매식물(Fixture)을 제거하고 동일 부위에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보철치료비)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영구치보철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임플란트 (Implant)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2년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보철물당, 연간1회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임플란트 (Implant)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우식	K02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K04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5

③ 제1항의 “연간”이란 이 특약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영구치 발거일)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복합 형태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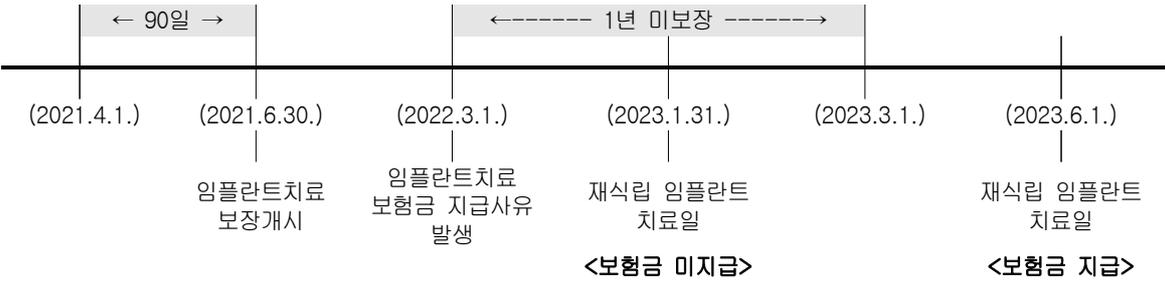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를 발거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부위에 치아보철치료를 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임플란트로 인하여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보철치료비) 제1항에서 정한 영구치보철치료비(이하 “임플란트치료 보험금”이라 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동일 부위에 “재식립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계약일 : 2021년 4월 1일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임플란트를 받는 경우]



※ 임플란트로 인한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동일 부위에 그 임플란트로 인한 임플란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하지 않음

- ② 제1항의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는 동일부위 당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이미 재식립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위에 다시 “재식립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및 “재식립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날은 매식물(Fixture)을 식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보철치료비)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의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아보철치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영구치보철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의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재식립 임플란트치료”에 한하여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 임플란트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아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영구치 발거를 진단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재식립임플란트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1.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아보철치료를 하고, 그 임플란트 치아보철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 2.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 이내에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아보철치료를 하고, 그 임플란트 치아보철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임플란트 치아보철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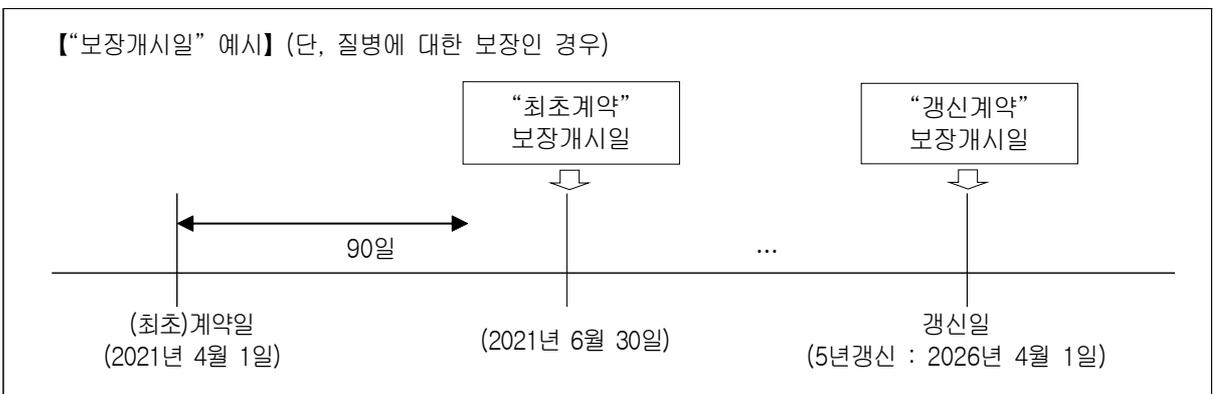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7.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8.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9.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영구치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2. 매몰치 및 매복치	K01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4. 잇몸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장애	K06
5. 치아알골이상(부정교합포함)	K07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10.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1.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보철치료비) 및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재식립임플란트 치료비)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영구치보철치료비)의 제1항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보통약관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2.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비)의 제1항의 보장개시일은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임플란트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영구치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연간3개한)(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 ⑦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란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영구치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시술할 목적으로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식재료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를 이용하여 치조골(잇몸뼈)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아래의 골이식(BBG, Block Bone Graft),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및 상악동거상술(SL, Sinus Lifting)을 말합니다.
 1. 골이식술(BBG, Block Bone Graft) : 골이식재를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한 부위에 이식하여 뼈를 형성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2.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 뼈를 이식하고 그 공간에 잇몸 등의 다른 조직들이 차오르지 않고 뼈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오를 수 있도록 막을 씌워 골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3. 상악동거상술(SL, Sines Lifting) : 상악 어금니 부위의 임플란트 시술에 적용되는 시술로서 상악동을 상부로 밀어 올려 그 곳에 골이식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측면에서 치조골(잇몸뼈)를 동그랗게 뚫어 접근하는 방법과 임플란트가 식립될 부분에 상악동을 밀어 넣어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아래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3개한)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2년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발거 1개당,연간 3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연간 3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연간 3개한)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우식	K02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K04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5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복합 형태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이상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를 발거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7.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8.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 9.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2. 매몰치 및 매복치	K01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4. 잇몸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장애	K06
5.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10.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1.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12.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ed osteogenesis) 등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시술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4. 영구치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무제한)(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젓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젓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 ⑦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란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영구치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시술할 목적으로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식재료(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를 이용하여 치조골(잇몸뼈)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아래의 골이식(BBG, Block Bone Graft),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및 상악동거상술(SL, Sinus Lifting)을 말합니다.
 1. 골이식술(BBG, Block Bone Graft) : 골이식재를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한 부위에 이식하여 뼈를 형성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2.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 뼈를 이식하고 그 공간에 잇몸 등의 다른 조직들이 차오르지 않고 뼈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오를 수 있도록 막을 씌워 골 재생을 유도하

는 시술을 말합니다.

3. 상악동거상술(SL, Sines Lifting) : 상악 어금니 부위의 임플란트 시술에 적용되는 시술로서 상악동을 상부로 밀어 올려 그 곳에 골이식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측면에서 치조골(잇몸뼈)를 동그랗게 뚫어 접근하는 방법과 임플란트가 식립될 부분에 상악동을 밀어 넣어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아래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 무제한)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2년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영구치 발거 1개당, 무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 무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 무제한)

② 제1항의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우식	K02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K04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5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복합 형태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이상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를 발거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7.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8.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9.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 (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2. 매몰치 및 매복치	K01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4. 잇몸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장애	K06
5.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10.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1.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12.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ed osteogenesis) 등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시술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어린이치아치료보장비(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젓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치”라 함은 젓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 있어서 “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 ⑦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 치료”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이하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코드 분류

구분		진료행위코드
단순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유치(Deciduous Tooth)	U4411
	전치(Anterior Tooth)	U4412
	구치(Posterior Tooth)	U4413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난발치(Complicated Extraction)	U4414
	단순매복치(Simple)	U4415
	복잡매복치[치아분할술을 실시한 경우](Complex)	U4416
완전매복발치 (완전 매복된 치아)	완전매복치[치관이 2/3 이상 치조골 내에 매복된 치아의 골절제와 치아 분할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Complete)	U4417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정 등의 개정으로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7항의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 치료”외에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발치(拔牙)】 치아를 제거하는 외과적 처치로서, 아래에서 정한 단순발치, 정교한 발치 및 완전매복 발치를 말합니다.	
단순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정상 맹출된 치아를 제거하는 치료술식으로 발치겸자 등의 기구를 활용하지만 잇몸 절개, 치아분할 또는 골삭제 등을 하지 않고 정상 발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발치할 치아가 치조골에 부분적으로 매복되어 있는 경우 또는 파절된 치아를 제거하기 위한 시술이며 단순 발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완전매복 발치 (완전 매복된 치아)	치관의 2/3 이상이 치조골 또는 악골내에 매복된 경우이며 골삭제와 치아 분할술이 필요한 치료술식을 말합니다.

- ⑩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치아보철치료”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영구치 발거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후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치료항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환자가 임의로 구강 내에서 빼고 끼울 수 있는 인공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 크게 국소의치와 총의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완전히 치아에서 지지를 받거나, 잔존 치조제 조직과 치아 양쪽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상악이나 하악의 모든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을 대체하는 치과 보철물을 말하며, 전적으로 조직(점막, 결체 조직 및 하부골조직)에 의해 지지를 받습니다.
 2.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인공 보철물을 말합니다.
 3. 임플란트(Implant) :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매식물(Fixture)을 식립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 ⑪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에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란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영구치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시술할 목적으로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식재료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를 이용하여 치조골(잇몸뼈)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아래의 골이식(BBG, Block Bone Graft),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및 상악동거상술(SL, Sinus Lifting)을 말합니다.

1. 골이식술(BBG, Block Bone Graft) : 골이식재를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한 부위에 이식하여 뼈를 형성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2.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 뼈를 이식하고 그 공간에 잇몸 등의 다른 조직들이 차오르지 않고 뼈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오를 수 있도록 막을 씌워 골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3. 상악동거상술(SL, Sines Lifting) : 상악 어금니 부위의 임플란트 시술에 적용되는 시술로서 상악동을 상부로 밀어 올려 그 곳에 골이식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측면에서 치조골(잇몸뼈)를 동그랗게 뚫어 접근하는 방법과 임플란트가 식립될 부분에 상악동을 밀어 넣어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에 정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발치치료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단순발치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0.5%(치아당)
정교한 발치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치아당)
완전매복 발치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치아당)

2.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단순발치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0.5%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0.5% (치아당)
정교한 발치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 (치아당)
완전매복 발치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 (치아당)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구치를 상실했을 때에는 상실된 영구치 1개당 아래의 영구치상실위로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영구치상실위로금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 (영구치 1개당)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영구치상실위로금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 (영구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 (영구치 1개당)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항목 별로 아래의 영구치보철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임플란트 (Implant)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2년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보철물당, 연간1회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철물당, 연간1회한)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5%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임플란트 (Implant)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발거 1개당, 무제한)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아래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0% (영구치 발거 1개당, 무제한)

2.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2년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 (영구치 발거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0% (영구치 발거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0% (영구치 발거 1개당)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우식	K02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K04
3.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5

- ⑥ 제3항의 “연간”이란 이 특약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영구치 발거일)로 합니다.
- ⑦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복합 형태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 ⑧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이상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⑨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를 발거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부위에 치아보철치료를 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⑩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복합 형태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 ⑪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이상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⑫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를 발거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발치(단순,정교,완전재복), 영구치 발거, 치아보철치료,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발치(단순,정교,완전재복), 영구치발거, 치아보철치료,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치열교정, 양악수술 등 미용상의 치료. 단,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제3대구치(사랑니)를 발거하는 경우
 - 2.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 3. 맹출장애 : 부분 매복되었거나, 완전 매복되어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 4.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 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2. 매몰치 및 매복치	K01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4. 잇몸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장애	K06
5. 치아열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 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2.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3.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 4.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영구치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2. 매몰치 및 매복치	K01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4. 잇몸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장애	K06
5. 치아열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5.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6.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⑥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3.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4.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는 경우. 이 때 각 분류번호별 정의는 【별표3】(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와 같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2. 매몰치 및 매복치	K01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4. 잇몸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장애	K06
5. 치아열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5.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6.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7.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ion osteogenesis) 등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시술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해관련 특별약관 】

1. 일반상해수술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 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골절”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골절”이라 함은 【별표4】(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제1조(“골절”의 정의)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는 1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골절수술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골절”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골절”이라 함은 【별표4】(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채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제1조(“골절”의 정의)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에 사유로 인한 골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일반상해사망보험금(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질병관련 특별약관 】

1. 질병사망보험금(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보통약관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보통약관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7조(강제집행 등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보통약관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

1.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회사는 1사고당 1심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법률비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만료 후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의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공제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의료사고법률비용}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계약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4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법원의 소장접수증명원, 변호사 착수비용 세금계산서, 병원 또는 의원의 진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보통약관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보통약관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보통약관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7조(강제집행 등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보통약관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납입)

- ①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 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2.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미보장 특별약관

제 1 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보험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우리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③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7】(기타관계법규) 참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cc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cc미만(전기모터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리 확인원 등으로 결정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

여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3. 특정 신체부위 ·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보통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범위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된 경우 또는 경험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있게 입증된 경우 등 피보험자의 과거 및 현재 병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 또는 질병 등으로 제한하며, 이 특별약관을 부가할 때에는 회사는 부담보 설정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변경에 대한 청약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사가 청약을 거절한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⑤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⑥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이 특약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약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중에 【별표5】(특정부위 분류표) 및 【별표6】(특정질병 분류표)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고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부위’라고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별표5】(특정부위 분류표) 참조)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고 합니다)(【별표6】(특정질병 분류표) 참조)
- ② 제1항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적용한 경우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이외의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⑤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 ⑦ 제1항의 특정부위는 4개 이내에서, 특정질병은 2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 할 수 있습니다.

제3조(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및 제36조(강제집행 등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별표1】 장 해 분 류 표

1 총칙

1. 장애의 정의

- 1)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애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지급률의 20%를 장애지급률로 한다.
- 5) 위 4)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 1) 하나의 장애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하나의 장애가 다른 장애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애로 둘 이상의 파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애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애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5) 장애진단서에는 ① 장애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애의 경우 ① 개호(장애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애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	10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애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시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5) 안구(눈동자)운동장애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애 정도를 평가한다.
-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애’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 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 ②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애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뚜렷한 시야 장애’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애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물(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애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컷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청력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pm 10\text{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애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 실시 후 장애를 평가한다.

다. 컷바퀴의 결손

- ‘컷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컷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 컷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애

-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애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14
	양측 전정기능 감소	10
	일측 전정기능 소실	4
치료 병력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기능 장애 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다가 쓰러지는 경우	20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8

- 평형기능의 장애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 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애의 지급률과 추상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60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40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애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

한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5) 개구장애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 10) 말하는 기능의 장애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애(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하나만 인정한다.
-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애로 평가한다.
-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애'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cm², 1/4 크기는 20cm²),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cm², 1/4 크기는 12cm²), 6세 미만의 경우는 4×6cm(1/2 크기는 12cm², 1/4 크기는 6cm²)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애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애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애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애로 평가한다.
- 2)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인접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

(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된 상태
-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된 상태
-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 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8) 약간의 운동장해
-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된 상태
-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이상일 때
-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이상일 때
-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이상일 때
-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서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서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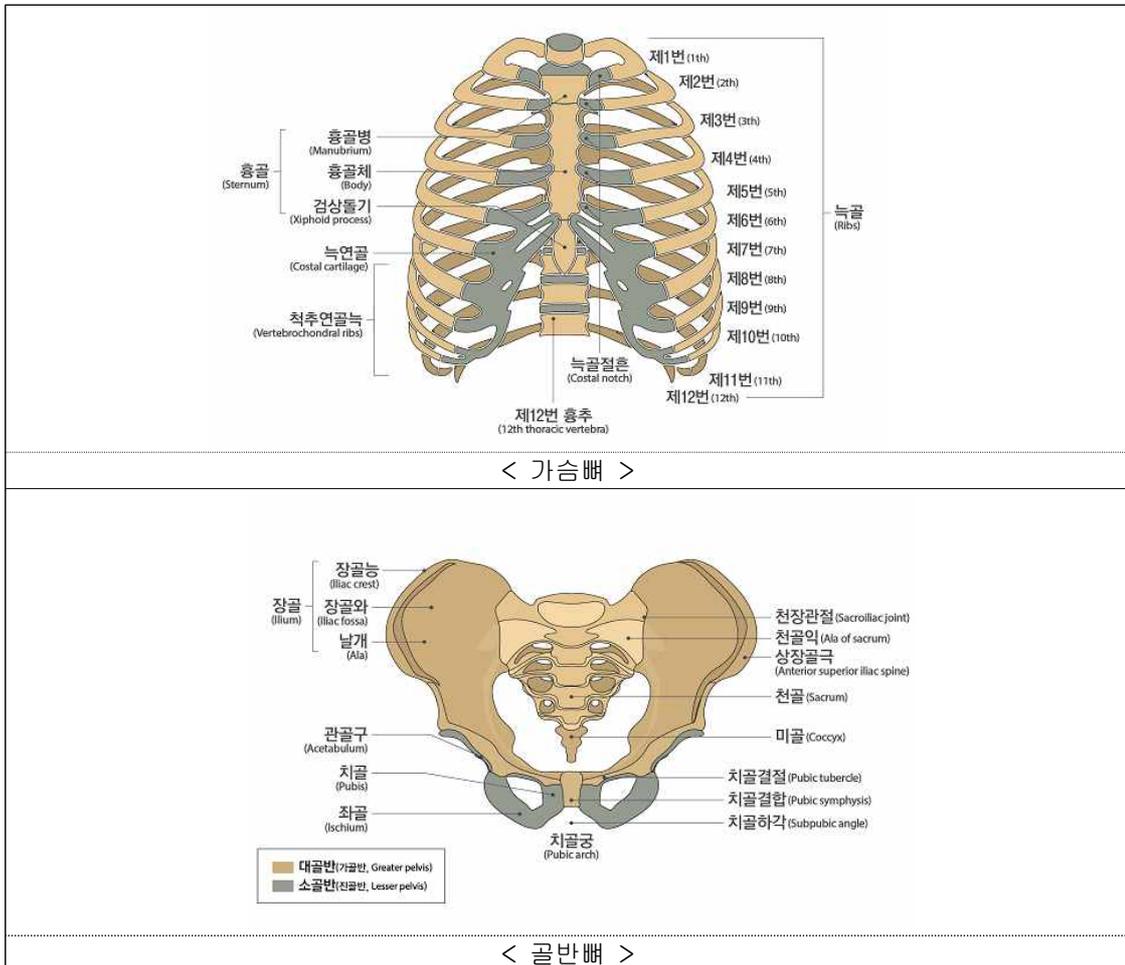
7. 체간골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8. 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팔의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애를 표시할 경우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 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애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를 말한다.

-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애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애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션)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션)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동요장애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 12)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

었을 때를 말한다.

-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7)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8)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지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손가락 >

11.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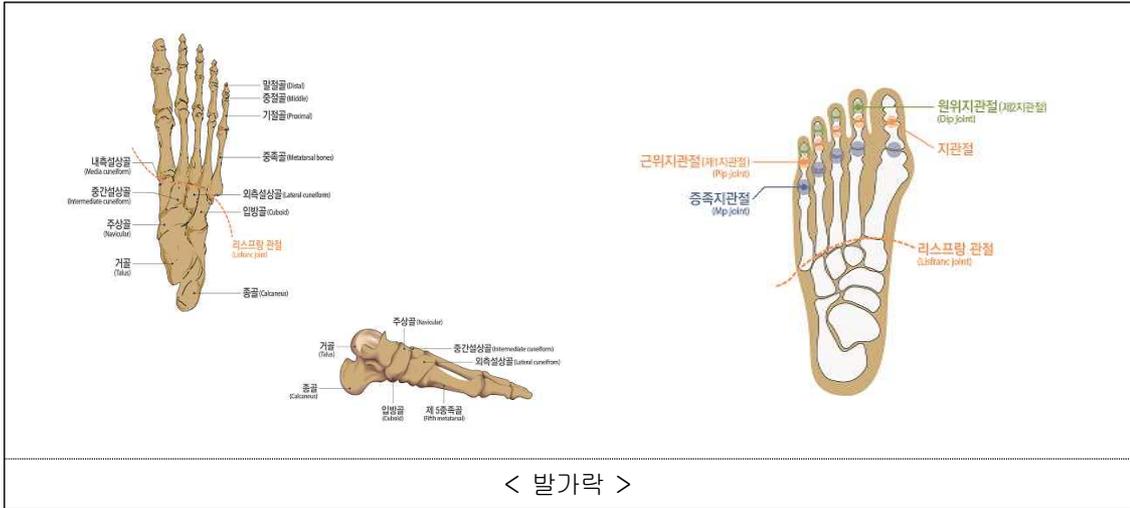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3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6)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다.

- 7)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5

나. 장애의 판정기준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나) 소장을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애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애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애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애로 보지 않는다.
-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애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애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을 때 ADLs 장애 지급률을 준용한다.
- 8) 상기 장애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75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0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25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긴 때	10
7) 극심한 치매: CDR 척도 5점	100
8) 심한 치매: CDR 척도 4점	80
9) 뚜렷한 치매: CDR 척도 3점	60
10) 약간의 치매: CDR 척도 2점	40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신경계
 - 가)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나) 위 가)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신경계의 장애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
 - 마) 장애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 2) 정신행동
 - 가) 정신행동장애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 나) 정신행동장애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

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주)}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주)}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주)}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란 3개월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 차) 정신행동장애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 카) 정신행동장애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 나) 치매의 장애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 다)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 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배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5%)
목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옷 입고 벗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기간	지 급 이 자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1.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3】
치아관련 질병 분류번호별 정의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치아관련 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정의	분류번호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K00(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에 해당하며, 선천적인 치아의 결손이나 덧니, 또는 여러 환경적 요인과 발육 관련 요인에 의해 치아의 개수나 모양이 정상과 다르게 형성된 경우를 말합니다.	K00
매몰치 및 매복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K01(매몰치 및 매복치)에 해당하며 매몰치는 다른 치아에 의한 폐쇄가 없는데도 맹출되지 못한 치아이며, 매복치는 다른 치아에 의한 폐쇄 때문에 맹출되지 못한 치아를 말합니다.	K01
치아우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K02(치아우식), K04	K02

대상질병	정의	분류번호
치수 및 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K04
치아경조직의 기타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K03(치아경조직의 기타질환)에 해당하며, 치아의 경조직에 질환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K03
치은염 및 치주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K05(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에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K05
잇몸 및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장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K06(잇몸 및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장애)에 해당되며, 치은퇴축(잇몸이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보이는 것), 치은비대 및 잇몸 및 무치성 치조용기의 병변 및 장애를 말합니다.	K06
치아열골이상(부정교합포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K07(치아열골이상(부정교합))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K07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지정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지정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 골절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 항목	분류 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2. 머리의 으깬손상	S07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0. 대퇴골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분류 항목	분류 번호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T14.2

-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주2)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 특정부위 분류표

구분	특정부위
1	위, 십이지장
2	위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총수돌기 포함)
3	대장(맹장, 직장 제외)
4	직장
5	항문
6	귀
7	다양 (쓸개) 및 담관
8	췌장
9	비장
10	기관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
11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12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13	식도
14	식도,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15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기) 포함]
16	안구 및 안구부속기 [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17	신장
18	투신
19	요관, 방광 및 요도
20	음낭
21	질 및 외음부
22	전립선
23	유방 (유선 포함)
24	사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25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26	난소 및 난관
27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28	갑상선
29	부갑상선
30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31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32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33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34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35	천골(양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경 포함)
36	왼쪽 어깨
37	오른쪽 어깨
38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39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40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41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42	왼쪽 고관절
43	오른쪽 고관절
44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45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46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47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구 분	특 정 부 위
48	상·하악골(위턱뼈·아래턱뼈)
49	쇄골
50	늑골(갈비뼈)

【별표6】
특정질병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지정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 분	특정질병	분류코드	항 목 명
1	담석증	K80	담석증
2	요로결석	N20 N21 N22 N23	신장 및 요관의 결석 하부 요로의 결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3	척추질환	M40 M41 M42 M43 M45 M46 M47 M48 M49 M50 M51 M53 M54	척추후만증 및 척추전만증 척추측만증 척추골연골증 기타 변형성 등병증 강직척추염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증 기타 척추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추병증 경추간판장애 기타 추간판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등통증
4	결핵	A15 A16 A17 A18 A19 B90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결핵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신경계통의 결핵 기타 기관의 결핵 좁쌀 결핵 결핵의 후유증
5	하지정맥류	I83	하지의 정맥류
6	골반염	N73 N74	기타 여성 골반의 염증성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 골반 염증성 장애
7	연골증 관절증 관절염 연골증 관절증	M00 M01 M02 M03 M05 M06 M07 M08 M09 M10	화농성 관절염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관절의 직접 감염 반응성 관절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감염후 및 반응성 관절병증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건전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연소성 관절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연소성 관절염 통풍

구분	특정질환	분류코드	항목명
	관절염	M11 M12 M13 M14 M15 M16 M17 M18 M19 M93 M94	기타 결절 관절병증 기타 특정 관절병증 기타 관절염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관절병증 다발관절증 고관절증 무릎 관절증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기타 관절증 기타 골연골병증 연골의 기타장애
8	심장질환	I00 I01 I02 I05 I06 I07 I08 I09 I20 I21 I22 I23 I24 I25 I26 I27 I28 I30 I31 I32 I33 I34 I35 I36 I37 I38 I39 I40 I41 I42 I43 I44 I45 I46 I47 I48 I49 I50 I51 I52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류마티스무도병 류마티스성 승모판 질환 류마티스성 대동맥판 질환 류마티스성 삼첨판 질환 다발판막 질환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폐색전증 기타 폐성 심장질환 폐혈관의 기타 질환 급성 심장막염 기타 심장막의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폐동맥판장애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심근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기타 전도장애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기타 심장부정맥 심부전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9	뇌혈관질환	I60 I61 I62 I63 I64 I65 I66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구 분	특정질병	분류코드	항 목 명
		I67 I68 I69 G45 G46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일과성 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 뇌혈관질환에서의 뇌의 혈관증후군
10	고혈압	I10 I11 I12 I13 I15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성 신장병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이차성 고혈압
11	당뇨병	E10 E11 E12 E13 E14 O24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기타 명시된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 임신중 당뇨병

- 주1) 제9차 개정이후 이 약관에서 지정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주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지정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지정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 기타 관계 법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6.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의 수시 지정하는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애의 측정)]

-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 ②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오그라듐,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삭제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意的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해야 한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 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意的 효력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 ⑨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意的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 대표자 및 제2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7. 삭제
- ⑪ 법 제32조제6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2. 「상법」 제719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3. 「상법」 제72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의 제3자의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 ⑬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⑭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의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재화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한 때
 -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등
 -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 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특약 색인 (가나다순)

- ☞ 골절수술비(갱신형) 특별약관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갱신형) 특별약관
- ☞ 신영구치보철치료비(무제한,틀니연간1회환)(갱신형) 특별약관
- ☞ 신영구치보철치료비(연간3개환,틀니연간1회환)(갱신형) 특별약관
- ☞ 어린이치아치료보장비(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갱신형) 특별약관
- ☞ 영구치보철치료비(무제한,틀니연간1회환)(갱신형) 특별약관
- ☞ 영구치보철치료비(연간3개환,틀니연간1회환)(갱신형) 특별약관
- ☞ 영구치상실위로금(갱신형) 특별약관
- ☞ 영구치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무제한)(갱신형) 특별약관
- ☞ 영구치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연간3개환)(갱신형) 특별약관
- ☞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형) 특별약관
- ☞ 일반상해사망보험금(갱신형) 특별약관
- ☞ 일반상해수술비(갱신형) 특별약관
-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비(급여)(갱신형) 특별약관
- ☞ 질병사망보험금(갱신형) 특별약관
- ☞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치료비(급여)(갱신형) 특별약관
-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연간1회환,급여)(갱신형) 특별약관
- ☞ 치수치료비(갱신형) 보통약관
- ☞ 치아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료비(급여)(갱신형) 특별약관
- ☞ 치아보존치료비(크라운무제한)(갱신형) 특별약관
- ☞ 치아보존치료비(크라운연간3개환)(갱신형) 특별약관
- ☞ 치아영상(X-ray및파노라마촬영)진단비(급여)(갱신형) 특별약관

고객님, 이제 MG손해보험이 함께 하겠습니다.